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5
----------	-----

2019. 7. 19.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9년 7월 1일

다. 회부일자: 2019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2019년 7월 10일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경우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대상(안 제4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구매실적 관리(안 제6조)
- 구매지침(안 제7조)
-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권장(안 제8조 ~ 안 제9조)
- 담당 공무원 교육 등(안 제10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 포상(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공립 각급학교로 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도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도내 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1. ~ 8의2. (생략)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1.>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 각급기관의 예산범위 안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촉진 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님